

2020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감사기간: 2020. 10. 12. ~ 11. 17.]

2021. 1. 14.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목 차

■ 2020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1

■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

1. 법인 3

2. 조선대학교 5

3. 조선대학교병원 12

4. 조선대학교치과병원 18

5. 호남권역재활병원 20

6. 조선이공대학교 22

7. 조선간호대학교 28

8.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31

9.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32

10.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33

11.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35

2020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계·인수감사 보고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귀중

2021년 1월 14일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와 우리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및 설치학교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재산상황, 회계에 대한 감사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인수·인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시한 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1. 제 법령, 정관, 규정의 준수 여부
2. 법인 및 각 설치학교의 규정 정비 여부
3. 제 규정의 법령, 정관 및 타 규정과의 부합 여부
4. 편성된 예산의 실행가능성,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5. 적절한 자산관리와 그 유지 여부
6. 법인과 설치학교간의 유기적 협조 여부
7. 법인 및 설치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8. 각 기관장의 업무장악 및 효율적인 통제 여부
9.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유지 여부
10.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11. 결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12.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3. 각급 기관장 및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에 인계·인수 적정성 여부
14. 기타 법인과 각 설치 학교 및 기관의 발전계획 검토 등

각급 기관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제도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에서 나온 것이나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 가능사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며, 각급기관은 따로 붙
임 지적된 사항 외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
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업무수행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채인 (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박태성 (인)

2020학년도 중간감사 및 인수·인계감사 결과보고서

(2021. 1. 14.)

기관명: 조선대학교

감사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 채 인 (인)

감사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박 태 형 (인)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p>여비 지급 세칙 중 야간교통비 지급 보완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여비 지급 규정」 제11조의 2(당일출장의 특례) 제 ②항에 따르면 당일로 귀임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야간교통비를 지급하되, 출장지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지역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고속철도 및 신규도로의 개통으로 서울 등 지역은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간교통비 지급 취지와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p>「여비 지급 규정」 제11조 2(당일출장의 특례)의 야간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완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p>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2	<p>ESS 구축사업 수익 증대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조선대학교 캠퍼스 내 ESS 구축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사업)은 학교부지 내에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설치하여 전기사용료 절감과 교내 ESS 구축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용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에너지 신산업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 대호전기(주), 참여기관 :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 전자부품연구원 등) •조선대학교는 전기요금 절감액 전액을 주관기관(대호전기(주))에게 지불하고 주관기관은 매년 부지사용 금액을 학교(조선대, 조선간호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2017.11)하였고, 2019학년도 전기요금 절감액을 대호전기(주)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총 계약기간(15년) 동안 대호전기는 투자대비 418%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 주관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대호전기, 조선대학교 및 조선간호대학교 3자간 체결한 협약서 제7조 (운용법인 및 기타 사항) 제③항에 따르면, 협약서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신의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조선대학교 「ESS 기술위원회 세칙」 제2조(기능) 5 호에 따라 위원회는 사업비 회수 및 회수 후 분할의 타당성 검토를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바, 조선대학교는 협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바탕으로 ESS 구축사업에 대하여 대학 수익 증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p>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장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에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학교부설 평생 교육시설 설치보고서(운영규칙, 교육과정 포함)는 별지 제8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은 2020년 1학기부터 2020년 2학기 까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조치
4	<p>징계의결 요구사항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법」 제61조 제①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 	관련자 조치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p>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56조 제①항 3호에 의하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선대학교는 「교원인사 규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조선대학교는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물리학과 교수 이 광주 지방법원으로부터 모욕죄를 범하여 일금 3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제청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 조선대학교는 징계를 제청하지 않고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원 징계 제청(안)을 심의 요청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 경고조치를 상신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 제청하지 않고 ‘경고’ 처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교원인사위원회 세칙 제2조(기능)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전임교원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주요 보직자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사항,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을 뿐 교원 징계 제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	<p>교내학술연구비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교원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내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지원분야 및 계획) 제③항 및 제7조(신청자격) 제③항을 개정하여 연구비 지원액을 줄이면서 1년간 교원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p>1인당 연구과제를 1과제에서 2과제로 과제신청 횟수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p> <p>•지원액을 축소하고, 지원 과제를 확대하여 연구력 증대를 꾀하였으나 감사일 기준(2020. 11. 10) 교내학술연구비 예산액 22억5천만원 중 21억6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p> <p>•「교내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연구비 신청시기 및 연구기간) 제①항 및 제8조(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계획의 변경) 제①항에 따르면 연구비 신청은 분기별 나누어 신청하고, 과제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2020년 12월에 신청할 교원의 연구과제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규정 개정 시 예산이 수반될 경우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규정 개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6	<p>보수공사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p> <p>•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③항 별표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②항에 의거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p> <p>•조선대학교는 체육대학건물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정산하면서 별도의 정산서류 없이 환경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관리비 정산 내역></p>	<p>○ 환수</p> <p>- 환경관리비 : 192,775원 (안전환경팀)</p>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p>•조선대학교는 정산서류 없이 지급된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p>	

※ 향후 감사 시 중점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한 사전 권고

연번	권 고 사 항	비고
1	<p>공사·용역 등 예정가격(원가계산) 산정 기준 마련 및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대학교는 공사 및 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①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①항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 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항목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동일 종류의 공사에 다른 비율이 적용될 경우 설계금액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참조하여 조선대학교에 맞는 원가 산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p>공사 및 용역 사후 정산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대학교에서는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 시 아래 주요 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여 입찰 시 반영할 금액과 사후정산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사 및 용역 완료 후 증빙에 따라 정확히 정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계상 및 정산(공사 및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및 8조 등 3. 환경관리비 계상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